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6-24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36(통개항 인근 해역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통개항 갯벌 출입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공고대상: 이0학(61년생, 인천광역시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026. 5. 15.(금)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통개항 갯벌 진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200,000원 * 기한 내 납부시 160,000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31.(월)

나.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제출

다. 제 출 처: 등기우편(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팩스(☎041-950-2948), 전자메일(lyj1354@korea.kr)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납부방법: 우리 서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1-950-2548)

나. 수납기관: ①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인터넷 지로(giro.or.kr), 인터넷 뱅킹(국고금 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